

**학생의 권리보호법 수정조항(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-PPRA) 하의 권리에 대한 안내**

이 통지는 학부모님/후견인과 해당 학생(독립된 미성년 또는 18 세 이상인 경우)에게 설문조사, 수집, 개인 정보의 상업적 사용, 건강 검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준비되었습니다. 이 권리에 대해서는 *아동권리보호법(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)* (20 U.S.C. § 1232h; 34 CFR Part 98)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.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(MCPS)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은 학부모와 해당되는 학생에게 다음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1. **동의:** 연방 교육부(U.S. Department of Education-USDE)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액 자금 보조를 받을 경우, 학생이 아래와 같은 보호된 영역에 관한 질문이 한 개 이상 담긴 설문지 ("정보 보호 설문조사")를 작성해야 할 경우,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- 학생 또는 학생 부모의 정치적 성향 또는 신념
  - 정신적, 심리적 문제가 있는 학생 또는 학생의 가족
  - 성적 태도와 성향
  - 불법, 반사회적 경향, 유죄의 인정 또는 품위 없는 태도
  - 응답자와 가까운 가족관계인 자에 대한 비판적 견해
  - 법적으로 인정된 특별한 관계 예: 변호사, 의사, 성직자 등
  - 학생 또는 부모의 종교적 관습, 가입, 그리고 신앙
  - 프로그램 적격 여부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수입
  
2. **제삼자**의 설문지, 보호된 정보에 관한 설문지, 마케팅이나 판매 목적으로 수집하는 학생 신상정보, 학생의 교육 교과과정의 일부로 사용되는 지도 자료를 검열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.
  
3. **다음에 관한 통보와 함께 다음 중에서 학생이 선택할 기회가 제공됩니다.**
  - 재정 지원 혹은 자금 보조에 상관없이 모든 보호된 정보에 관한 설문조사
  - 비상 상황이 아닌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생의 등교 조건으로 시행되는 침윤성 검사 또는 심사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바로 처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검사 (청각, 시각, 척추충만증, 법에 요구되는 신체검사는 제외)

MCPS 는 보호된 정보 설문조사의 수집, 공개,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, 판매, 배포나 유통을 위한 정보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학생 권리 보호와 다음 권리에 관한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하였으며 학부모님과 이 규정의 해당 학생에게 최소한 2 회, 새 학사연도를 시작할 때와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때, 통보하여 드립니다.

또한 MCPS 는 직접 학부모와 해당 학생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새 학사연도 시작 전에 다음 활동의 시행일 또는 예정일을 알려 주며, 학생이 참여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.

- 수집, 공개,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, 판매, 배포나 유통을 위한 정보의 개인적 사용
- USDE 에 의해서 일부 또는 전액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보호정보 설문조사 시행
- 위에서 요구되는 비상상황이 아닌 경우의 침윤성 검사나 심사

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모/후견인과 해당 학생은 다음 주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 
 U.S. Department of Education  
 400 Maryland Avenue, S.W.  
 Washington, D.C. 20202-4605